

## 「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·신중년 취업지원 사업」

### 참여기업 모집공고

우리시 내 청년·신중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「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·신중년 취업지원 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. 01. 05.

남원시장

1

####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26. 1. ~ 12.(예산 소진시 종료)
- 사업규모 : 청년 4명, 신중년 10명
- 지원내용 :
  - 기업 : 청년·신중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지원 (최대 12개월)
  - 청년 :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(6/12/24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원씩 300만원 지급)
  - 신중년 :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(6/12/24개월 이상 근무 시 50/50/100만원씩 200만원 지급)

\*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70만원 지급(40시간 이내,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)

2

#### 지원대상

- (신규)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남원시 소재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업
  - 신중년
    - 1)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

2) 신중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

3)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

### – 청년

1) 대상 청년이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중 이거나,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

2)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

○ (기존) 전년도 참여 기업의 경우,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수 이상 고용할 것

#### 〈제외대상〉

##### • 소비 향락업 등

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
(일반유통 주점업, 무도유통 주점업, 기타 주점업 등)

②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 제5호의 '청소년 유해업소'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

##### • 국가 및 공공기관 등

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
•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##### •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
•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 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
• 신중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
•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
•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

•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•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• 전년도 중도탈락률 50%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

•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

•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## ① 신청서류

- (신규)
  - 청년·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(서식1) 1부.
  - 청년·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(서식2) 1부.
  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.
  -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.
  -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보험(25년 10~12월) 각 1부.
  -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

② 신청기간 : 2026. 01. 05.(월) ~ 2026. 01. 30.(금) 18시

※ 1차 공개모집 이후 필요 시 연중 수시 모집

③ 신청장소 : 남원시 기업정책과(☎063-620-6352)

④ 신청방법 : 방문 접수

4

## 유의사항

- 실시기업은 청년·신중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·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다.
- 실시기업은 해당 시군과 「청년·신중년 취업지원협약」을 체결하고,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- 실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,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  - 청년·신중년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중년을 채용하는 경우
 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- 청년·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업무 추진 세부사항은 지침에 따름.